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7. 18 선고 2022가단30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3. 7. 4.

판 결 선 고 2023. 7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E 사이의 2022. 3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은 5,799,4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5,799,4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1. 5.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9차전1063호로 ‘3,745,84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2. 12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)은 E의 모인 F의 소유였는데, F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인 E 등 6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6 지분씩을 각각 상속했다. E는 2022. 3. 22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/6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)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)했고, 그 지분에 관하여 2022. 4. 8.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등 5명은 2022. 5. 19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 및 H에게 8,500만 원에 매도했고, 2022. 6. 15. G 및 H 앞으로 각각 1/2 지분씩 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을 제6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.

따라서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가 처분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에 상응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일단 E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자신이 부담한 다음 E의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한 대금으로 사후정산하려는 목적 아래 편의상 E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고, 이 사건 증여 당시 E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.

3.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).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,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0015 판결,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).

나.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- 1) E와 C는 남매지간이다. 그런데 E는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익산시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. E와 피고가 평소 자주 왕래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- 2) E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였다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는 하나, 신용점수가 낮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제한을 받아 이를 발급·소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.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상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
- 3) I생으로 홀로 지내던 E는 2022. 2.경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2022. 4. 7. 퇴원한 후 곧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22. 4. 19. 사망했다. 그동안 E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다. E의 병원비, 간병비 및 장례비 합계액은 적어도 870만 원을 초과한다.
- 4) 피고는 E가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음을 알고 일단 자신이

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이후 이 사건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병원비와 간병비를 사후정산하려는 계획 아래 이 사건 지분을 좀 더 높은 가격에 용이하게 매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아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. 이러한 사정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E의 사망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바로 일괄 매도한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심홍걸

별지

목록

1. 나주시 J 전 2,898㎡
2. 나주시 K 답 876㎡, 끝.

